

## 2차시. 신호위반 사고

### 학습목표

1. 국내법령에서 제시한 **신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고유형과 판례분석을 통해 **처별 관련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3.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다.

### 1. 개요 - 신호의 개념

#### 1.1 신호

신호란 차량 신호등과 버스 신호등으로 나눌 수 있고, 차량신호등은 다시 원형, 화살표, 사각형 등화로 나눌 수 있다.

#### 1.2 신호위반 사고

: 신호 및 지시위반이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등의 안전표지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4가지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해당된다.

가. 장소적 요건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경찰관 등의 수신호, 지시표시판(12가지)이 설치된 구역

나. 피해자적 요건

- 신호·지시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다. 운전자의 과실

- 고의적 과실, 의도적 과실, 부주의에 의한 과실

라. 시설물의 설치요건

-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설치한 신호기나 안전표지

#### 1.3 신호위반 사고의 일반적인 유형

- 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진행사고
- ② 황색주의 신호에 무리한 진입사고
- ③ 황색주의 신호에 사전 출발사고
- ④ 좌회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 ⑤ 비보호 좌회전 지역 좌회전 중 사고
- ⑥ 보조 신호등 위반사고
- ⑦ 신호기에는 내용 없고 노면표지만 있는 지역에서 충돌사고
- ⑧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사고
- ⑨ 경찰관의 수신호 위반사고

## ⑩ 모범운전자(헌병)의 수신호 위반사고

### 2. 대표 사고유형

(1) 교차로 적색등화 점멸 시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는가?

-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가 있을 경우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황색등화가 점멸 중일 경우에는 일시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동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2) 황색 등화 시 빠르게 진입하라는 의미인가?

- 황색신호가 켜질 경우 자동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다만, 교차로에 자동차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도 과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와야 한다.

### 3. 사례

(1)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 시 노면의 좌회전표시에 따라 좌회전 시도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는가?

- 교차로에 신호표지가 없고 단지 노면표시에만 좌회전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노면표시에 따라 좌회전을 했을지라도 사고발생시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대법원 95도3093).

(2)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미설치된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3) 비보호좌회전 표시에 따라 좌회전 중 후방차량과 충돌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

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나레이션에서는 '별개의 논의'로 제시)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690 판결).

(4)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으로 교차로 통과 중인 택시와 충돌을 해도 긴급자동차에는 책임이 없는가?

-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만 면책된다.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 방향에 이미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07. 3. 6. 선고 2006고정4418 판결).

## 4. Q&A

신호위반 부분과 교통사고발생 원인이 무관한 경우도 신호위반책임이 있는가?

-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을 말한다. 신호위반행위가 있었다라도,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

## 5. 안전가이드 Tip

- ① 도로교통법상 신호의 종류와 의미를 주의하여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운행한다.
- ② 황색 등화 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 ③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 ④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 ⑤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를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
- ⑥ 교차로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신호변경, 좌우회전을 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다.
- ⑦ 녹색신호가 켜져 있어도 교차로 전에서 사전에 감속해야 한다.
- ⑧ 신호 대기 후 녹색신호 출발 시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서서히 출발한다.